

감정평가서

건명	주식회사 모티전력 소유물건(2025타경1329)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지현
감정서번호	B2504-8-0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정일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홍웅기

(주)정일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 지사장 한상규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오억일천팔백만원정 (₩518,000,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지현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경매1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모티전력 (2025타경132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4.16	2025.04.15 ~ 2025.04.16	2025.04.16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2개호	구분건물	2개호	-	518,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518,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모티더베스트빌' 제 1층 제101호 외 3개호로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대상물건의 현황

■ 이용상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0-8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76)					
명칭	모티더베스트빌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사용승인일	2017.03.30.	
규모 (동, 호수)	46호/10세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이용상황	제2종근린 생활시설	
일련 번호	층/호 (용도)	면적(m ²)			소유권·대지권 (m ²)	비고
		전유	*공용	계		
가	1/101 (제2종근린생활시설)	47.81	15.994	63.804	6.5116	집합건축물 대장상 '101호'로 합병됨.
라	1/109 (제2종근린생활시설)				5.555	
나	1/107 (제2종근린생활시설)	48.165	16.1126	64.2776	6.5116	집합건축물 대장상 '107호'로 합병됨.
다	1/108 (제2종근린생활시설)				5.6446	

* 계단 등 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4월 16일임.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4월 15일~ 2025년 4월 16일이며, 의뢰목록 등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에 대해 조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의 기준가치 및 조건

1. 기준가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의 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참고 및 유의사항

- 가.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해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일체성을 갖는 물건으로 건물(구분소유권)과 토지(소유권대지권)를 일체로 하여 가격형성이 되는바 건물(구분소유권)과 토지(소유권대지권)의 개별적인 평가가 곤란하나,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평가명세표상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나. 본건 일련번호(가,라)은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3.29.일자로 [전유부합병 1층 10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 25.8㎡ 공용 8.6309㎡, 1층 109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22.01㎡, 공용7.363㎡ -> 1층 10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47.81㎡ 공용 15.9939㎡]로 등재되어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정리 상태인바,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다. 본건 일련번호(나,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3.29.일자로 [전유부합병 1층 107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 25.8㎡ 공용 8.6309㎡, 1층 108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22.365㎡, 공용7.4817㎡ -> 1층 107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48.1650㎡ 공용 16.1126㎡]로 등재되어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정리 상태인바,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라. 본건 일련번호(가~라)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의 사유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관련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입찰시 내부 구조,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을 재확인 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의 방법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감정평가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②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③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이 있는데, 구분건물(집합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로 적용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제1항은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평가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을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의 합리성을 검토하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평가방법의 적용

평가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구분건물(집합건물)로서 관련 규정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는데,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므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함.

3. 기타 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근거

1. 평가개요

대상물건은 위치, 부근의 상황, 규모,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 인근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및 기타 가치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가.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 면적 (㎡)	용도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전유기준 (원/㎡)	비고
					사용승인일			
①	연산동 859-2 시청역퀵즈 더블유	1/101-1**	88.3244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소매점)	2024.10.28.	601,859,600	6,814,194	-
					2016.11.21.			
②	연산동 859-2 시청역퀵즈 더블유	1/101-1**	57.3368	제1종 근린생활 시설 (휴게 음식점)	2025.01.20.	305,951,400	5,336,039	-
					2016.11.21.			
③	연산동 2400외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 근린생활시설 D동(203동)	1/1**	30.2835	근린 생활시설	2023.10.26. 2023.09.05.	341,446,000	11,274,985	선정
④	연산동 784-44 디오빌아파트 에이동	1/1**	35.67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소매점)	2024.09.30.	230,000,000	6,447,996	-
					2003.12.02.			
⑤	연산동 584-1 한성기린아파트 상가동	1/1**	33.12	구매시설	2024.10.15. 1993.11.05.	305,000,000	9,208,93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유사 물건의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HUB)

기호	소재지, 건물명 (용도)	층/호	전유 면적 (㎡)	기준시점	감정평가액 (원)	전유기준 (원/㎡)	평가 목적
				사용승인일			
㉠	연산동 588-7 연산역 유성해네스타워 (제2종근린생활시 설(부동산 중개사무소))	1/ 근린생활 시설1**	22.285	2024.12.26.	208,000,000	9,333,632	법원 경매
				2016.09.26.			
㉡	연산동 859-2 시청역퀵즈더블유 (업무시설(사무소))	1/101-1**	170.97	2025.01.22.	1,007,000,000	5,889,922	시가 참고
				2016.11.21.			
㉢	연산동 867-2 성일이안시티 (제2종근린생활시 설(휴게음식점))	1/1**	59.12	2023.11.02.	430,000,000	7,273,342	담보
				2016.10.1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가. 비교사례 선정

대상물건과 유사한 건물 내에 위치하는 사례로서 대상물건과 이용상황,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고 최근에 거래되어 상대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사례를 선정하였음.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	전유면적 (m ²)	용도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전유기준 (원/m ²)
					사용승인일		
③	연산동 2400외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 근린생활시설 D동(203동)	1/1**	30.2835	근린 생활시설	2023.10.26.	341,446,000	11,274,985
					2023.09.05.		

나. 사정보정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1) 개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2) 시점수정치 산정

본건의 시점수정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자본수익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 자본수익률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단위 %)

구분		변동률			
부산	집합상가 자본수익률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0.2	-0.07	0.1	0.11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0.0	0.1	0.13	-0.16

■ 시점수정치

구분	시점	변동률 (%) (시점수정치)	비고
일련번호 (가~라)	2025.04.16.	-0.035% (0.99965)	집합상가 지역 : 부산 (23.10.26~25.04.16)
거래사례 ③	2023.10.26.		$(1+0.0011*67/92)*(1+0)*(1+0.001)*(1+0.0013)*(1-0.0016)*(1-0.0016*106/92) \approx 0.9996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 일련번호 (가~라) / 거래사례 ③ 비교

요인	세항목	비고	격차율
단지 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본건은 사례 대비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0.85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폭, 구조 등)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본건은 사례 대비 건물의 규모,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등에서 열세함.	0.94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본건은 사례 대비 위치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0.60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 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등함.	1.00
격차율 계			0.47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단가결정

■ 산식 =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일련번호	사례단가 (원/m ²)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m ²)	적용단가 (원/m ²)
가~라	11,274,985	1.000	0.99965	0.479	5,398,828	5,400,000

※ 적용단가는 만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2) 정상가격 수준 및 낙찰가율

- ①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구분건물 가격수준은
 [근린생활시설]:@5,000,000원/m² ~ 6,000,000원/m²(전유면적당 단가)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② 최근 1년간 경매 낙찰가율

(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용도	소재지	낙찰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근린	부산광역시	58.19	50.70	327
	연제구	71.21	68.87	9
	연산동	71.65	66.54	7

※ 낙찰가율 : 총낙찰가 / 총감정가

※ 낙찰률평균 : 낙찰가율합계 / 낙찰건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산가액 결정

■ 산식 = 면적 × 단가

일련번호	전유면적(m ²)	단가(원/m ²)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비고
가	47.81	5,400,000	258,174,000	258,000,000	집합건축물 대장상 '101호'로 합병됨.
라					
나	48.165	5,400,000	260,091,000	260,000,000	집합건축물 대장상 '107호'로 합병됨.
다					
합계				518,000,000	-

※ 백만원 단위미만 반올림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건물명 (용도)	층/호	전유면적(m ²)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연산동 700-8 모티더베스트빌 (제2종근린생활시설)	1/101	47.81	258,000,000	집합건축물 대상상 '101호'로 합병됨.
라	연산동 700-8 모티더베스트빌 (제2종근린생활시설)	1/109			
나	연산동 700-8 모티더베스트빌 (제2종근린생활시설)	1/107	48.165	260,000,000	집합건축물 대상상 '107호'로 합병됨.
다	연산동 700-8 모티더베스트빌 (제2종근린생활시설)	1/108			
합계				518,000,000	-

2.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물건의 제반 입지조건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방매사례, 평가사례의 가격,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76	700-8 모티더 베스트빌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2종근린 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0층				집합건축물 대장 기준
				지1층	161.4075			
				1층	339.315			
				2,3층	각 338.44			
				4-8층	각 334.765			
				9,10층	각 275.2625			
				부속건물 주차장				
				일반철골구조 평슬라브지붕 단층	48.24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101호	25.8	47.81	258,000,000	
	1소유권대지권	6.5116	6.5116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109호	22.01						
	1소유권대지권	5.555	5.555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77,400,000		
					건 물 :	180,6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나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107호	25.8	48.165	260,000,000	집합건축물 대장상 '107호'로 합병됨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면적포함 :64.2776㎡)
				1소유권대지권	6.5116	6.5116		
다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108호	22.365			
				1소유권대지권	5.6446			
					652.5			
					652.5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78,000,000 182,000,000	
합 계							₩518,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모티더베스트빌' 제1층 제101호 외 3개호로서, 인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3호선 물만골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외 3개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3.30.)

외벽: 스톤코트 마감 등,
창호: 시스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가~라): 공히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이용상황 등은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하시기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0m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5m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8-05-02)(54m이하)<건축법>.

(9) 공부와의 차이

1) 본건 일련번호(가,라)은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3.29.일자로 [전유부합병 1층 10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 25.8㎡ 공용 8.6309㎡, 1층 109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22.01㎡, 공용7.363㎡ -> 1층 101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47.81㎡ 공용 15.9939㎡]로 등재되어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정리 상태인바,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2) 본건 일련번호(나,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3.29.일자로 [전유부합병 1층 107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 25.8㎡ 공용 8.6309㎡, 1층 108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22.365㎡, 공용7.4817㎡ -> 1층 107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전유48.1650㎡ 공용 16.1126㎡]로 등재되어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정리 상태인바,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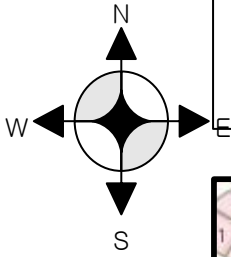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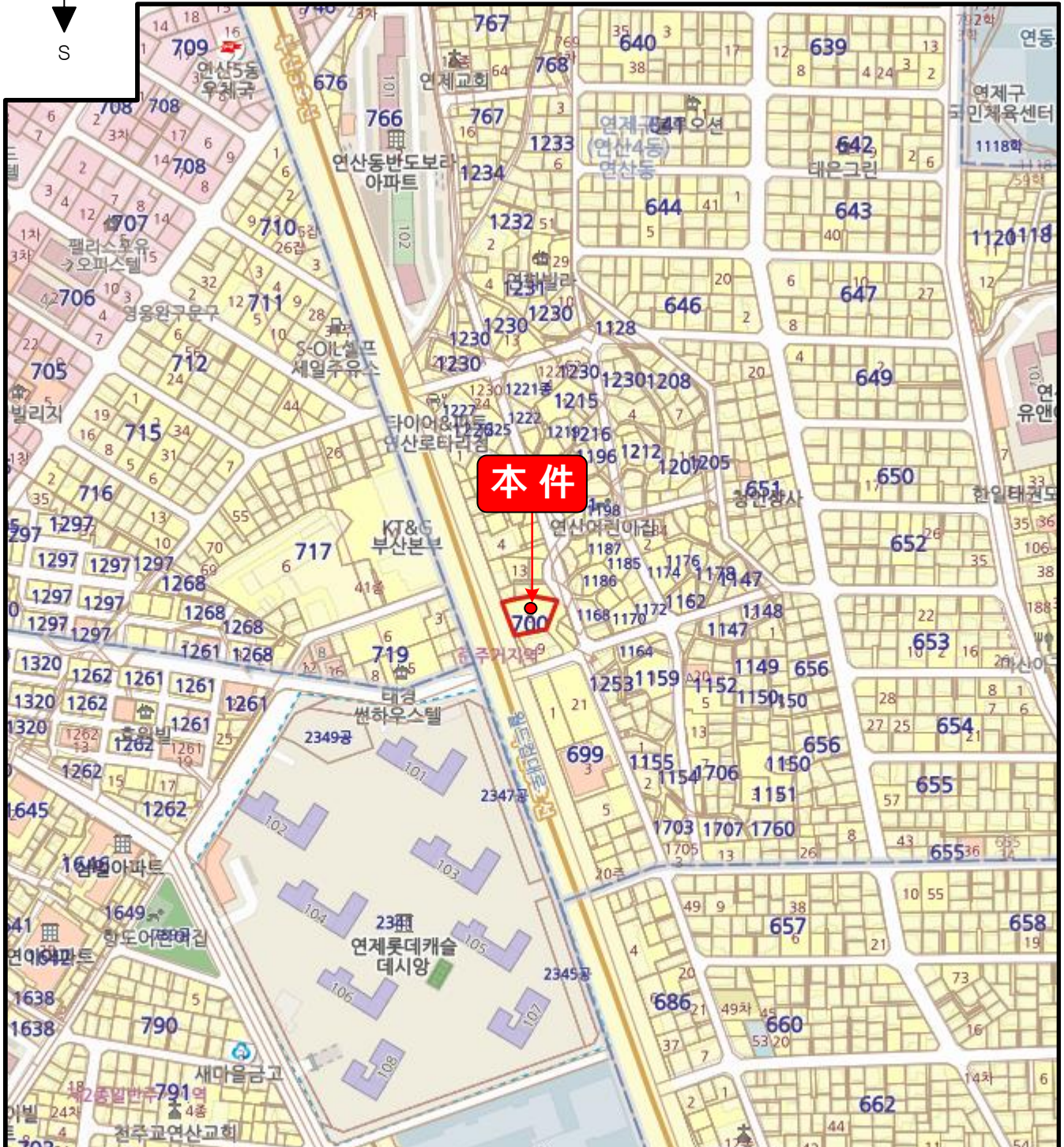
- 1) 임대관계: 미상임.
- 2) 기타사항: 없음.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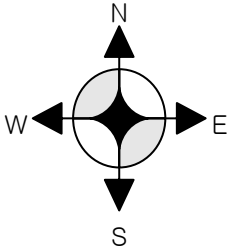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0-8
모티더베스트빌 제1층 제101호 외 3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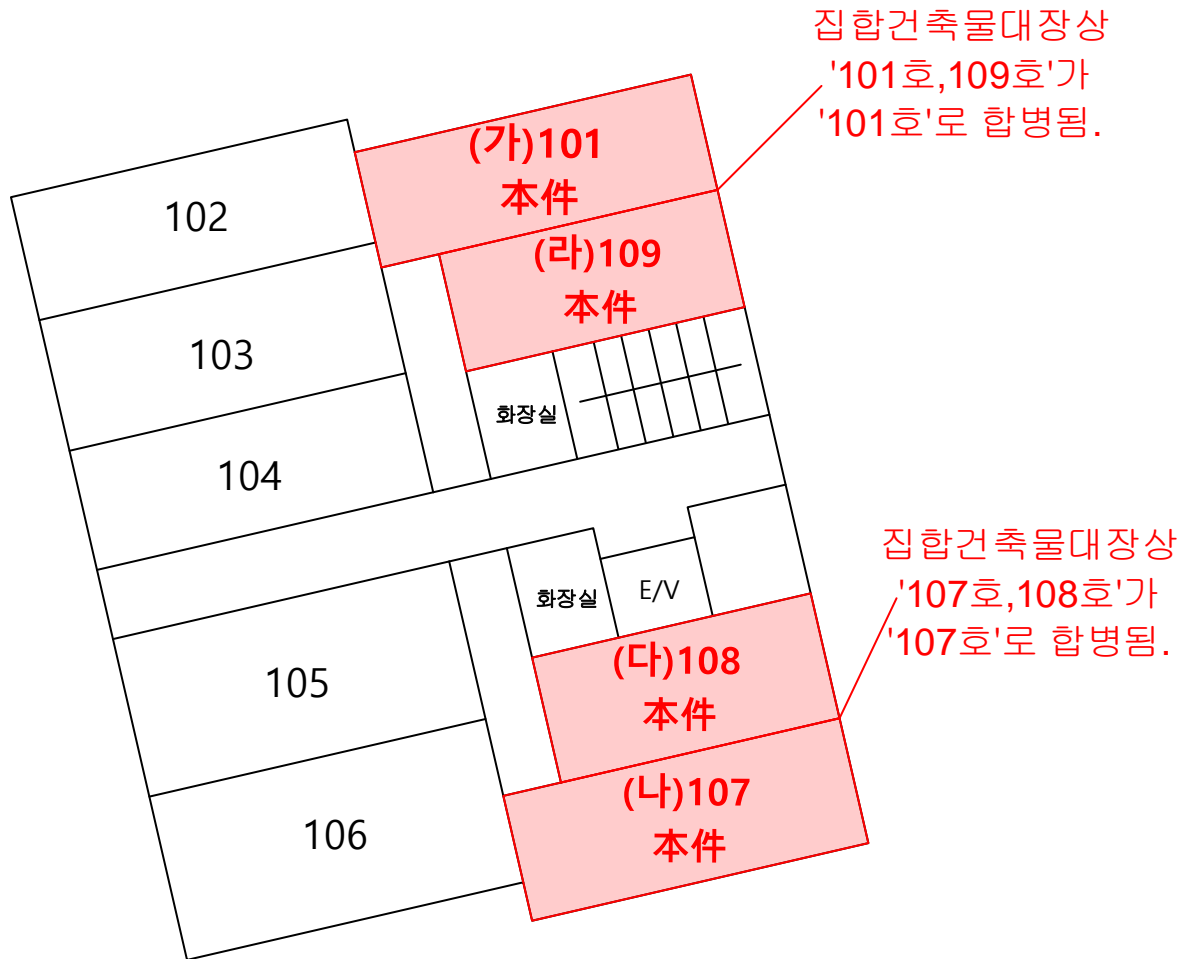


호 별 배 치 도



S: Non Scale

< 모티더베스트빌 제1층 호별배치도 >







(,)



(,)

